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19호

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

‘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’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1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(1)	법인명(성명)	브리짓테크놀러지(주)		
	주 소	우24431 강원도 춘천시 하사관길 26-5		
	전화번호	02-732-0217	팩스번호	-
신청인(2)	법인명(성명)	극동건설(주)		
	주 소	우48434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5, 401호		
	전화번호	02-2280-6114	팩스번호	-
신청인(3)	법인명(성명)	지에스건설(주)		
	주 소	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그랑서울		
	전화번호	02-2154-2120	팩스번호	-
신청인(4)	법인명(성명)	(주)삼보기술단		
	주 소	우38654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63(정평동,7층,김스메디빌빌딩)		
	전화번호	02-3433-3000	팩스번호	-
신청인(5)	법인명(성명)	(주)천일		
	주 소	우0629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0길 10, 522호		
	전화번호	02-558-1001	팩스번호	-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781호
- 명 칭 :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
- 기술분야 : 토목 > 교량 > 교량거더
- 신기술의 내용
이 신기술은 곡선교에 적용 가능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 및 시공 기술에 대한 것으로, 동일 교량 내에서도 서로 다른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을 가지는 각각의 거더를 한 조의 현장설치 스마트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기술과 현장 여건에 따라 단부블럭, 전도방지 인양 장치를 적용하여 시공이 가능한 기술이다.
- 신기술의 범위
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곡선 거더의 제작을 위한 거더 길이와 곡률반경, 형고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몰드 시스템 및 전도방지 인양장치를 이용한 시공기술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- 가. 보호기간 : 2016.01.15. ~ 2030.01.14.(14년)
- 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 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 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 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

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기 타

- 본 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kaia.re.kr>) 「지식/성과도서관/신기술·추천기술」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